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0.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변경 허용 (안 제58조의3)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안 제16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 신설 (안 제59조의2, 안 별표19)
 -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40%까지 허용
 -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건폐율 50%까지 허용하며,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 설치 허용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는 건폐율 30%, 공원에는 건폐율 20%까지 허용
-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치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55개 업종 공장 추가 설치가능토록 함 (안 별표19)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치원·중학교로 변경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18)
- 액화석유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변경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변경 (안 별표3,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67조의3, 안 별표4, 안 별표15, 안 별표18)

■ 주민불편 해소 및 관련 실과 의견 반영 등을 위한 개정

-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개발행위 일부변경 (안 제19조)
-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건축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28조)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을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조정 (안 제30조)
-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 설치가능면적 축소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13)
-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공익적 기능의 시민편익 시설의 설치가능토록 개정 (안 별표21)
-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의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 보전녹지지역 : 전시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묘지관련시설 (안 별표14)
 - 생산녹지지역 :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함), 창고(농업·임업·축산업용 제외), 의료시설 (안 별표15)
 - 자연녹지지역 : 창고(농업·임업·축산업용 제외) 및 집배송 시설 (안 별표16)

- 보전관리지역 : 노유자시설, 창고(농업·임업·축산업용만 해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안 별표17)
- 생산관리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제외), 농업용 판매시설,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안 별표18)
- 계획관리지역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아스콘 또는 레미콘공장,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제외), 폐차장 및 매매장 (안 별표19)
- 농 림 지 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전소 등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안 별표20)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결과

- 기 간 : 2009.12.18 ~ 2010.01.06 (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5.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9조제3호 다목 중 “토지의 굴착” 을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 조성 등 개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주목적 사업인 건축법을 따른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임목도 60% 이상인 토지” 를 “임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임목 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로 한다.

1.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이상, 보전관리·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건폐율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동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과 동 개정령 시행 당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시행기간 내에 준공된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다),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67조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 별표 2의 제2호에 가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 마목, 별표 5의 제2호 차목, 별표 6의 제2호 아목, 별표 8의 제2호 사목, 별표 9의 제2호에 사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다목, 별표 5의 제2호 다목 중 “2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자목 (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같은 목 (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4종사업장 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 다목 중 “3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 “로 한다.

별표 10의 제2호 마목 중 “바목, 사목, 자목”을 “라목, 바목”으로 하며,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13의 제2호 마목 중 “3천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4의 제2호 다목 중 단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라목을 자목으로 하고,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5의 제2호 마목 (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15의 제2호의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을 각각 바목, 사목, 아목, 차목,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라목, 마목, 자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6의 제2호 차목 중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를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단서 “(폐차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7의 제2호 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하고, 같은 호 다목의 단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의 제2호 라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마목 (1)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같은 목
(2)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같은 목 (3),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로, 같은 목 (4) 중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
지 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서
제4종사업장 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단서 “중 동호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을 라목, 바목, 자목, 차목, 타목,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에 다목, 마목, 사목, 아목, 카목, 파목, 하목,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
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의 제2호 아목 (1) 중 “마목 (1) 내지 (4)” 를 “자목 (1)부터 (4)까지” 로 하고, 자목 (1) 중 “아목 (1) 내지 (5)” 를 “카목 (1)부터 (5)까지” 로 하며, 같은 목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9의 제2호 자목 중 (3), (4)를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호 카목 중 “사목 및 차목” 을 “라목·바목 및 사목” 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단서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을 삭제하며, 같은 호 파목 중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를 “관광휴게시설” 로 한다.

별표 19의 제2호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을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하목, 거목, 너목,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마목, 바목,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의 제2호 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호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을 바목, 아목, 카목,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사목, 자목, 차목,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의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의 제2호 아목 중 “사목” 을 “라목” 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관련법 개정 등
제19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나.(생략)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u>토지의 굴착</u> 라.(생략) 4. ~ 6.(생략)	제19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 1. ~ 2.(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나.(현행과 같음) 다. ----- ----- ---- <u>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u> 라.(현행과 같음) 4. ~ 6.(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 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 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u> <u>은 5,000제곱미터 이상, 관리·농림지역</u> <u>은 15,000제곱미터 이상, 보전녹지·</u> <u>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u> <u>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u> 2. ~ 3. (생략) 4. <u>임목도 60% 이상인 토지</u>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설></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 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 개 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 가기간은 주목적사업인 건축법을 따른 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 ----- ----- ----- ----- -----. 1. <u>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생</u> <u>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u> <u>계획관리·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u> <u>이상, 보전관리·보전녹지·자연환경보</u> <u>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u> <u>지의 형질변경</u> 2. ~ 3. (현행과 같음) 4. <u>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u> <u>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u> <u>지</u> ----- ----- 제58조의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u>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u> <u>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u> <u>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u> <u>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u>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u><신설></u>	<u>에만 변경 할 수 있다.</u> 제59조의2 (건폐율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동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과 동 개정령 시행 당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시행기간 내에 준공된 것을 말함. 이하 본조에서 같다),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67조의3(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4조	제67조의3(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u>초등학교</u>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u>초등학교·중학교</u> 및 <u>고등학교</u>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라. (생략)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u>액화석유가스충전소</u> 및 <u>고압가스충전·저장소</u>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u>유치원·초등학교</u>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u>유치원·초등학교</u>.-----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 -----<u>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u>, ---- ----- ----<u>저공해자동차</u>----- -----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나. (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 인 것 라. ~아. (생략) 자. (생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별표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u>같은 호</u>----- ----- -----<u>1천 제곱미터</u>----- ----- ----- ----- ----- ----- 라.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 -----<u>같은 법</u>----- -----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u>같은 법</u>-----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u>같은법</u>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4종사업장까지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해당하는 것 (5) (생략)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 인 것 타 ~ 파. (생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u>2천제곱미터</u>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 파. (생략)	에 해당하는 것 (5) (현행과 같음)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 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u>같은 호</u>——— ————— ————— <u>1천 제곱미터</u> ————— ————— ————— ————— ————— ————— ————— ———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 ————— — <u>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u> ————— ————— ———<u>저공해자동차</u>의 ————— ————— ————— ————— 카. ~ 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u>3천제곱미터</u>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라.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 자. ~타. (생략)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u>1천 제곱미터</u>----- ----- 라. ~사. (현행과 같음) 아. ----- ----- -----<u>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u>,----- ----- -----<u>저공해자동차</u>----- ----- 자. ~타.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 아. ~자.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바. (현행과 같음) 사. ----- ----- -----<u>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u>,----- ----- -----<u>저공해자동차</u>----- ----- 아.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 (생략) 2. (생략) 가.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u>액화가스판매소</u>,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u>무공해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 아. ~ 차.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 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u>바목</u>, <u>사목</u>, <u>자목</u>(시내버 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u>무공해</u> <u>저공해자동차</u>의 연료공급시설에 해 당하는 것 바. (생략)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연면 적의 합계가 <u>3천제곱미터</u>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u>, ----- ----- -----<u>저공해자동차</u> ----- 아.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u>라목</u>, <u>바목</u>, ----- ----- -----<u>저공해자동</u> <u>차</u>-----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u>1천 제곱미터</u> -----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바. ~ 타 (생략)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u>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라. (생략) <u><신설></u>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u>종교집회장</u> <단서삭제>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u>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u>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u>종교시설</u>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u>의료시설</u>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u>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u> 자. (현행 라목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u><신설></u> <u><신설></u> <u><신설></u> 다.(생략) 라.(생략)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 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 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관 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 료시설 바. (현행 다목과 같음) 사. (현행 라목과 같음) 아.----- ----- -----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 -----같은 법----- -----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생략) <u><신설></u> 바. (생략) 사. (생략) <u><신설></u>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자. (생략)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u>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u> 카. (생략)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u>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u>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u>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u>	른 1종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u>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u> 차. (현행 바목과 같음) 카. (현행 사목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u>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u>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u>자동차 관련시설 <단서삭제></u>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u>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u>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라.(생략) <u><신설></u>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u><신설></u>	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u><단서삭제></u>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현행 라목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u>다.</u> (생략) <u><신설></u> <u>라.</u>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u>중학교·고등학교</u>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u><신설></u> <u><신설></u> <u>마.</u>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 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 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 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u>라.</u> (현행과 같음) <u>마.</u>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u>의료시설</u> <u>바.</u> ----- -----<u>유치원·중학교</u>----- ----- ----- ----- <u>사.</u>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u> <u>아.</u>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u>수련시설</u> <u>자.</u> ----- ----- ----- ----- ----- ----- ----- (1)-----<u>제2조제9호</u>에 ----- --- (2)-----<u>제2조제11호</u>에 ----- ----- ----- ----- (3)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u>」 ----- ----- ----- ----- ----- --- (4)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u>」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것 <u><신설></u> 사. (생략) <u><신설></u> <u><신설></u> 아. (생략) <u><신설></u>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서 제4종 사업장까지에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u><단서삭제></u>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현행 사목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현행 아목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현행 라목과 같음) 아. (현행 마목과 같음) 자. (현행 바목과 같음) 차. (현행 사목과 같음) 카. -----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u>별표18 제2호 마목 (1)내지 (4)에 해당하는 것</u> (2) ~ (5) (생략)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u>아목 (1)내지 (5)에 해당하는 것</u> (2) <u>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u> (3) <u>「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	----- ----- ----- ----- ----- ----- ----- (1) <u>별표18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u> (2) ~ (5) (현행과 같음) 타. ----- ----- ----- ----- (1) <u>카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u> (2) <u>「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삭제></u>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삭제>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 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u><신설></u>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u><단서신설></u>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 목·나목·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매매 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		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 스콘 공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거. ----- -----라목·바목 및 사목에-----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u><단서삭제></u>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	

광 휴게시설 <u>중 휴게소</u>	광 휴게시설 <u><단서삭제></u>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u>중 동호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나. (생략) <u><신설></u>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u><단서신설></u> <u><신설></u> <u><신설></u> 라. (생략) 마. (생략)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u>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u>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현행 나목과 같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u>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u>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현행 라목과 같음) 타. (현행 마목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u><신설></u>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u><신설></u>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현행 마목과 같음)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 -----같은 호 -----라목에 -----	